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석사학위논문

1992년 한중 수교 시 대만 정부
재산의 이양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Transition
of Government Properties from ROC to PRC in 1992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SUN YEN CHU

1992년 한중 수교 시 대만 정부
재산의 이양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태 균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SUN YEN CHU

SUN YEN CHU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위 원 장 Erik Moberand

부 위 원 장 한 정 훈

위 원 박 태 균



A Study on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Transition
of Government Properties from ROC to PRC in 1992

Professor Park, Tae Gyun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August 2017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SUN YEN CHU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SUN YEN CHU

June 2017

Chair Erik Mobrand 

Vice Chair Han, Jeong Hun 

Examiner Park, Tae Gyun 

〈국문초록〉

1992년 한중 수교 시 대만 정부 재산의 이양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

1992년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정식으로 수교한 지 올해가 25주년이 되는 동시에 한국과 중화민국(대만)도 단교 25년의 아픈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 해이다. 한국은 1992년 국제정세의 상황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오랫동안 특수한 관계를 맺는 반면 우방 혈맹이었던 중화민국과는 단교하였다.

단교 후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중화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화민국대신 대만(타이완)으로 부르고 있으며, 양국의 관계도 비공식적인 구조로 전환되어 유지해 왔다. 그러나 단교 후에도 양국의 단교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나 반한 정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시 단교 과정에서 중화민국 소유 재산의 중국공산당 이양 문제로 민족 자부심에 상처를 받게 된 기억은 이후 본국과 한국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더 심화되곤 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공산당이 국교를 맺게 되자 중화민국 주한 대사관이 고스란히 중국공산당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건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층 더 향상시키려면 과거 외교사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 특히 단교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재산의 이양 쟁점이 제대로 천명되며 꼼꼼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화민국 단교(한중수교)에 있어서 정부 재산 이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우선, 한국과 중화민국 단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사례로 단교 시 정부 소유재산의 이양에 대한 처리 유형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한중수교, 국제법, 정부승인, 정부철회, 하나의 중국, 중국대표권
학번: 2015-25172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기존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과 자료.....	6
II. 한·중국 수교(한·중화민국 단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	7
1. 한국이 수교하게 된 요인.....	7
2. 중국이 수교하게 된 요인.....	10
3. 중화민국(대만) 외교 실황.....	13
III. 단교 후 정부 소유재산 이양의 유형 비교.....	17
1. 정부승인의 철회.....	18
2. 대만의 국제법상 지위.....	23
3. 정부 소유재산 이양 유형.....	26
IV. 한국 정부 채택한 방식 및 교섭 과정 검토.....	39
1. 대만대사관의 처리.....	39
2. 한중수교 회담.....	42
3. 한국-대만 단교과정의 특징.....	52
V. 결론.....	60
〈참고문헌〉	63
〈Abstract〉	66

I. 서론

1. 연구 목적

1992년 한국(韓國)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정식으로 수교한 지 올해가 25주년이 되는 동시에 한국과 중화민국(中華民國)¹⁾ 단교 25년의 아픈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 해이다.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스스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게 마련이다. 한국도 1992년 당시 국제정세의 상황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관계를 수립했고,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오랫동안 특수한 관계를 맺는 반면 우방 혈맹이었던 중화민국과는 단교했다.²⁾ 더욱이 단교 과정에서 말로 더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과 굴욕을 느낀 중화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을 역사상 최악의 단교국가로 비난하였고 이와 같은 반한(反韓)정서는 그 후에도 계속 잠재화되어 수시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단교 후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중화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화민국대신 타이완(대만)으로 부르고 있으며, 양국의 관계도 비공식적인 구조로 전환되어 유지해 왔다. 한중수교에 따라 정치·외교적 변화와 더불어 여러 법적 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 소유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였

1)1992년 이전 중화민국(中華民國 ROC)은 공식적인 국가명호를 사용해 지만 한국과 중공의 수교한 후 한국에서는 대부분 중화민국 대신 타이완이나 대만(臺灣)으로 부른다. 이와 함께 중국(中國)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RC)를 지칭하게 된다. 이하 이들 세 나라의 명칭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과 한국, 중화민국과 대만 또는 타이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공 또는 중국을 병용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둔다.

2)한국의 입장에선 냉혹한 국제 외교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기습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수교는 수많은 단교의 경험을 가진 대만과 대만인들에게 더할 수 없는 배신감을 줌으로써, 이전의 어떤 국가와의 수교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반감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규태, 1994, 「한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 과거, 현재, 미래」, 『동서연구』, 제27편, p.66

다.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정부 재산은 바로 국가의 상징인 중국대사관(구 명칭)이다. 중국대사관은 원래 청나라의 외교공관이었고, 일제강점기 때에도 중화민국 영사관으로 쓰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립한 뒤에는 청나라 때처럼 대한민국 주재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한중수교에 따라 중화민국이 철수한 대사관은 곧바로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으로 탈바꿈하였다. 대만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한이 있어도 대사관건물만은 자신들의 소유라 주장했지만, 중공이 내세운 조건에는 대만과의 단교 외에도 '수교국내 존재하는 대만재산은 모두 중국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대사관의 소유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했지만 모든 중화민국 정부의 재산을 이양하지는 않았다. 단교 당시 한국 정부는 대만의 재산을 외교재산과 비외교재산으로 나누어 화교학교, 화교협회 국민당당부 등 토지를 비외교재산으로 여기며 중공에게 주지 않았다.³⁾

한국·대만 단교 후에 양국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대만은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무역대상이며 인적 교류와 문화관계도 상당히 긴밀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의 단교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나 반한 정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단교과정에서 중화민국 소유 재산의 중국공산당 이양 문제로 민족 자부심에 상처를 받게 된 기억은 이후 본국과 한국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더 심화되곤 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공산당이 국교를 맺게 되자 중화민국 주한 대사관이 고스란히 중국공산당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건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대만 사람들이 현재 서울 명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을 지나가면 결코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는

3)그러나 이처럼 토지들의 소유주는 중화민국이란 이름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재산권의 분쟁은 몇 번 발생하였다.

것이다. 25년이 지난 오늘, 최초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나라가 대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과 단교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반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승인의 전환에 따라 대사관 이양과 관련된 사례들이 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상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중국대표권'인 사례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단교 시 정부재산의 이양 문제를 다루려면 중화민국과 다른 국가의 단교 사례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상대국에 따라 중화민국 정부 재산의 처리 방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만과 한국은 동일한 유교 문화권으로 공유하는 가치가 넓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짧은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눈에 띄게 이룩했으므로 양국이 다방면에서 교류 및 협력의 파트너가 될 만한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층 더 향상시키려면 과거 외교사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 특히 단교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재산의 이양 쟁점이 제대로 천명되며 꼼꼼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화민국 단교(한중수교)에 있어서 정부 재산 이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우선, 한국과 중화민국 단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사례로 단교 시 정부 소유재산의 이양에 대한 처리 유형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소련과 서방국가들이 화해함에 따라 1990년 이후 탈냉전의 세계적 흐

름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배경에서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 국교를 맺었다. 이처럼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관계를 맺은 것은 역사 및 정치 학계에서 각별한 관심을 끄는 주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92년 한·중수교(韓中建交)에 관한 연구들은 풍성한 성과를 가지게 되었다. 오경훈(1992)은 한중수교의 배경과 그것이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정세에 미치는 여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한중수교가 이룩된 요인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한국의 북방외교, 대만의 실질외교, 그리고 일본의 정치·군사적인 영향력 확대 등 이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또한 한중수교 20년이 지난 2012년에도 학자들은 1992년 한중수교를 바탕으로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였다. 총성의(2012)는 한중수교 20년이 된 시점에서 한중관계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였고 미래 전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한중수교에 대한 배경과 인식 그리고 한국 및 중국이 수교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이성일(2012)은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의 의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회고하였다. 그는 한중수교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정치적으로 한국과 대만의 외교 단절 부분도 언급하였다.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외교관계에 대하여 손준식(2013)은 1948년 반공동맹관계부터 1992년 국교단절까지 역사적인 맥락을 매우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였다.

주입희·문홍호(2015)의 『대·한외교관계사』에서 한국과 대만의 외교관계 변화를 시간대로 정리하며 단교 10년 전에 일련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책에 따라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1983년 5월 5일 「중국민항기납치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과 중공의 관계가 발전되며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격히

벌어지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납치사건을 처리하면서 중공과 공식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담판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중공 측에 가까워지고 양방 비공식 외교관계도 날로 향상되었다. 1983년 상하이에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공은 한국 대표팀을 요청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또한 1984년 한성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청년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공은 국기를 가진 채 입장하였고 대만 대표팀은 경기에서 퇴출되었다. 납치사건은 1년 3개월을 걸쳐 해결되었지만 대만인들은 반공교육 때문에 한국정부는 반공의사(납치사건 주모자)를 압수하고 대만으로 안 보내주는 것에 이해하지 못 하였다. 그리고 주입회는 대만 사람들은 1994년 아시아 청년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대만은 국기와 국가(노래)문제로 퇴출당한 것에 매우 큰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한국이 대만의 공식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방국 땅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권력도 없는 것을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1992년 한중수교에 대한 연구들이 적지 않지만 이에 비하여 한국과 중화민국 단교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만 학자 왕언메이의 연구에서 한국과 중화민국 단교를 다루었지만 한국의 화교와 대만인들에 대해 한중수교와 대만과의 관계 단절이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한다. 단교 당시 큰 쟁점을 일으킨 중화민국 정부 재산 이양 문제를 다루는 기존 연구가 매우 적다. 이는 당시 한국에서 한·중수교가 가져오는 영향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연구할 때 중화민국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례로 토론해도 정답을 찾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주입회·문흥호(2015)의 『대·한외교관계사』에서 단교 시 대만 정부재산 이양에 대하여 언급했지만 자세히 다루지 않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 글에서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 단교에 대하여 정부 재산

문제를 비롯한 국제법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3. 연구방법과 자료

본 논문은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들이 다루는 성과를 바탕으로 1992년 한중수교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본 후에 중화민국(타이완, 대만) 정부 재산 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해서 국제법 및 학설에 의하여 실증사례를 분석하며 비교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1992년 한국과 대만의 단교 과정에서의 법적·정치적 측면에서의 쟁점 여부를 살펴보고 재검토할 것이다. 한중수교(한·대만 단교) 전개 및 발전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당시 한국과 중국의 공식 입장, 즉 국교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외교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양국의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을 검토하면서 당시 언론 매체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배경을 실증하여 한중수교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중국근현대사학회가 출판한 『중국근현대사연구 58』에서 손준식은 「'兄弟之邦'에서 '凶地之邦'으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48-1992)에 대하여 사건 중심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양국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정리하였다. 한국과 대만의 냉전기부터 단교까지 외교관계사에 대한 포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의 단교 또는 한중수교의 배경에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재산 이양 문제, 즉 다른 국가와 중화민국의 외교관계 단절 시 중화민국의 소유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함께 검토하였다. 따라서 중국어 및 영어로 된 자료들도 많이 참고하였다.

또한 1992년 한중수교에 대한 진실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공개된 부분이 많지 않으며 언론 매체도 많이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2000년 이후 출판된 외무부장의 회고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상옥 전 외무장관의 외교회고록 『전환기의 한국외교』와 중국 외교의 대부인 첸치천 전 부장의 『열 가지 외교 이야기』(外交十記)를 살펴보며 한중수교 과정을 검토한 뒤 재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다섯 장으로 나누어 제 1 장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목적 및 문제의식, 그리고 선행 연구 자료, 연구 방법 등 이 논문에 대한 영역 및 범위를 밝혀두었다. 또한 제 2 장에서는 한중수교의 전개 과정, 즉 수교의 시작, 경과 및 결과를 보여 준다. 그 다음으로 제 3 장에서는 국제법 범주를 중심으로 단교에 관한 정부승인 및 국제법 효과, 또는 중국-대만 간의 국제법적 관계를 살펴본 후에 학설과 구체적인 국가사례로 단교 때 중화민국 정부 재산의 처리방식에 대해 비교해 보고, 제 4 장에서는 1992년 한국정부의 단교 과정에서의 교섭 또한 재산에 대한 처리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 결론은 전체내용을 요약하며 1992년 한중수교에 관한 당시 국가들의 입장·교섭·처리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결실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본문의 제 2 장에서의 한중수교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한·중국 수교(한·중화민국 단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한국이 수교하게 된 요인

한중양국의 수교는 외교사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교이전의 양국관계를 보면 대략 40년 동안 이념적인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양국이 1992년 정식으로 국교수립 이후 25년 만에 이룩한 발전상을 보면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총성의(2012)는 양국이 수교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 네 가지 요인들을 정리해 놓았다. 그에 의하면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양국의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교류와 인적인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념적인 적대관계를 뛰어넘어 국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문화적 동질성을 들 수 있다. 한중양국은 이념적인 차이가 존재했지만 양국은 동아시아 유교적인 문화권에 속한 관계로 교류할 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자문화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화적 동질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요인은 경제적인 상호 보완성이라고 지적하였다. 당시 양국이 수교되면서 경제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국의 수출시장 개척 목적은 상호간의 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정치·외교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익의 동질성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⁴⁾ 즉, 한반도에서 한중양국은 동북아의 평화유지와 공동발전이 양방의 이익을 대변하여 줄 수 있는 전제조건이었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변화를 중요시하므로 이념적이 차이 또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4)총성의, 2012, 「한중수교 20년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5권 1호. p.275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이다. 우선 정치적인 요인을 볼 때 중국과의 수교는 한국의 대북·통일정책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하여 중국과의 수교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⁵⁾

경제적인 요인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다. 당시 한국 경제는 60-70년대의 베트남전쟁특수와 70-80년대의 중동시장의 개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했다. 이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가 한국 경제의 출로 또는 진일보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밖에도 당시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미국과 일본에 높게 의존하면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도 보인 상황이었다. 한국은 대미일의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무한한 경제 잠재력과 투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앞에 언급한 듯이 몇몇 요인들에 의하여 결국 1992년 한국이 이념적인 차이를 넘어 중국과의 관계를 추진하고 양국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5) 중국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대표로 참석한 당사국으로 남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수교는 남북 평화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었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고 중국의 역할 여하여 따라 진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총성의, 2012, 「한중수교 20년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5권 1호. p.276 인용

2. 중국이 수교하게 된 요인

한중수교는 무엇보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⁶⁾ 80년대 후반 들어 공산진영이었던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가 잇달아 쇠퇴하자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경제의 실패가 동구와 소련 공산당의 몰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귀결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중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배경은 바로 경제문제에 있다고 파악하여 경제위주의 국가정책, 경제안정성을 위한 외교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특히 1989년 일어난 천안문사태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⁷⁾ 당시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위협론까지 나왔었다.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이 서방 선진국에 의존했던 개혁정책이 어려워져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수정을 만들며 서방국가 대신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더불어 중국과 한국관계에 있어서 1983년 중국민항기 사건,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성 및 잠재력을 직접 경험하였으므로 한국과의 관계추진은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던 것이다. 당시 중국이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가는 무역상대국으로 발전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보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대한관계를 경제적인 차원을 넘

6) 중국은 80년대 들어 '1개 중심(경제건설), 2개 기본(개혁 및 개방정책 견지...)'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고,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오경훈, 1992)

7)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중국을 통제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천안문사건 이후 서방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다. 이런 경험을 하였던 중국은 서방 선진국에 대신하는 다른 노선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어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의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중양국의 수교를 통한 경제적 실리는 서로에게 무시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수용하였던 것이 정치적인 요인들이다. 특히 중국이 아무리 경제발전을 강조하더라도 정치적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북방외교 정책으로 한중수교를 서두른 것 역시 수교의 진전은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1991년 상반기까지 한중수교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수교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그 성사는 북한과 미국 및 일본 간의 관계개선에 달려 있다고 밝혀두었다.⁸⁾

이에 관하여 1991년 6월 6일 덩샤오핑(鄧小平)이 "수교는 마땅히 기다려야 하고 경제무역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소위 정경분리(政經分離)의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경제교류는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되, 정식수교는 한반도 정세의 완화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의도였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요구도 한중수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미·일 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해진다.⁹⁾

그러나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개선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북한과 일본의 수교도 미국의 강한 견제에 의해 침체된 상황이 되자 중국은 북한과 미·일 간의 관계개선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꾸었다. 오히려 한중수교를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의

8)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朱良은 91년 4월16일까지도 "한국과 중국 간의 국교-정상화는 북-일, 북-미간의 국교정상화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훈,1992)

9)오경훈,1992, 「한중수교와 한반도 주변정세」, 『정세연구』,민족민주운동연구소, p.43 인용

정세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한중 비공식관계가 먼저 해결되면 북·일, 북·미 관계개선을 추구할 명분도 생기고, 나아가 미국과 일본이 계속 북한에 대한 적대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한반도 또는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태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략적으로 하면 중국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정치·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동을 저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일본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PKO 법안 통과 이후 점차로 국제문제에 대한 개입의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없어진 동북아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키워가는 움직임에 대하여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였다.¹⁰⁾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일본-한국의 삼각 정치군사동맹에서 일본의 확대된 영향력을 우려하면서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동북아 정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였다. 중국은 1989년의 천안문사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아시아 외교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1991년 8월 1일 후에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와 국교를 맺었다. 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수교가 이루어지면 동아시아 지역 기반의 장비를 대체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수교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당시 중화민국(대만)이 강력한 경제력을 수단으로 한 실질외교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화민국이 적극적으로 실질외교를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은 점은 중국이 대한수교를 서두르게 만든 주요인이기도 했다.

10) 물론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계속 발전하지만 대외관계에서 중국이 경제적 협력과 동시에 정치군사적 견제라는 양면적 수단을 취하고 있다.

3. 중화민국(대만) 외교 실황

상술한 바와 같이 한중수교에 대하여 1990년대 중화민국의 외교발전의 실태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一中)'론을 오랫동안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개념과 실질적 통치영역의 한계에 의하여 현실에 맞는 '쌍중(雙中)승인론'에 입각하여 1989년 이후 경제 원조를 수단으로 실리(實利)외교 공세를 세웠다.¹¹⁾

실리외교 정책은 이등휘(李登輝)가 총통에 취임 후 대만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이었다. 이등휘 총통은 과거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탄성(彈性)외교'란 명칭 대신 실리(實利)외교로 대체하였다.¹²⁾ 이총통에 의하면 일반 주권국가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외교활동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시가와 지역 또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모든 정부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로서 탄성외교로 명명할 수 없으며, 탄성외교의 명칭 사용은 고정된 입장 없이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상만 준다.¹³⁾ 이는 절대 대만이 추구하는 외교적 강화의 방법이 아니다. 이총통은 여러 차례 자신이 실리(實利)외교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였다. 그는 처음에 1988년 5월 일본 讀賣新聞社의 訪中團을 접견했을 때 실리외교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재 중화민국은 국제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도적인 고립화와 타격 그리고 왜소화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더욱 적극적이고 실리적인 태도로 정면 도전하여 국제정세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11)오경훈,1992,「한중수교와 한반도 주변정세」,『정세연구』,민족민주운동연구소, p.44 참조

12)林碧韶,鄭端躍,1992,「臺灣의 實利外交政策」,『中蘇研究』,통권54호,p.57 참조

13)林碧韶,鄭端躍,1992,「臺灣의 實利外交政策」,『中蘇研究』,통권54호,p.57 인용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외교방면에서 우리는 각 우호국가와의 쌍방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모든 非적대국가와 상호간의 경제무역, 문화와 과학기술 등 각각의 실질관계를 맺고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국제의무를 분담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더욱 폭넓은 지역을 개척해야 한다."¹⁴⁾

이후 여러 번 발표된 담화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총통의 실리외교는 다음 4대 원칙으로 귀결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중국' 및 '중국통일'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실리외교는 외교정책과 대륙정책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대만정부는 '중국이 오직 하나이며,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분열된 중국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40년간 지속된 양안의 분열은 이미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현재 대만의 통치영역은 臺灣, 澎湖, 金馬에 불과하고 중국의 통치영역은 대륙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실리외교는 현재 통치영역을 토대로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기초로 삼아 대외관계를 추진하고 기존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가 2개의 실체로 분열된 것은 일시적 현상이다. 중국의 분열이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통일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과도단계로서 해협양안은 각자의 생존을 위한 독립적인 국제인격 및 외교적 존립공간을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쌍방은 상호·대등한 실체와 지위를 존중하고 서로 신뢰를 추구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결국 중국을 통일하는 데 유일한 기초가 될 것이다.

넷째, 호혜평등·평화공존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열된 국

14) 臺灣 「中央日報」, 1989/05/09, p.2

가의 두 개의 정치 실체는 모두 국제사회에서 평등하고 완전한 국제법인체로서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실리 및 정식 외교관계를 추진할 수 있으며 다른 요소로 인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에 제시한 실리외교의 함의로부터 대만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양안의 분열 사실은 대중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성과는 인정받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중승인(雙重承認)이 가능하고 '대만과 중국의 불양립(不兩立)을 고집하지 않는 '대만과 중국의 공존'의 입장을 들 수 있다. 이제 상대국가가 이중승인을 원하는지의 여부는 상대국에 달려있다. 세 번째는 대만이 국제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활동에 참여하며 실질외교의 제한을 극복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실체에 가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넷째는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국가명칭과 국기문제의 제한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총통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 정부가 "대만의 이대통령이 방문했다"라고 발표하자 그는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였다. 또한 1989년 5월에 대만 재정부 대표단이 중국타이베이(中國臺北)라는 명칭으로 북경에서 거행한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출석하였다. 1990년 1월에는 중화민국이 "臺灣·澎湖·金馬관세지역"이란 명의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ATT)에 가입을 신청하였다.

실리외교는 대만이 더 넓은 국제공간을 쟁취하기 위해 관념과 방법상에서 중대한 발전을 보일 수 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국제활동을 통해 국제사무에 대한 발언권을 증진할 수 있고, 또 국제적 발언권을 증진해야만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대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제적으로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외교 전략이 변화하지는 않지만 실리외교가 개방적인 다양화전략으로 이런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다.

실리외교는 경제력을 기초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만당국은 실리외교, 경제외교의 공세를 조화롭게 운용하는 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2년 안에 바하마·그레나다·리베리아·월리스·레소토·기니비사우·니카라과 및 중앙아프리카 등 몇 개국과 수교 혹은 복교를 했으며, 1990년 한 해 동안에 헝가리·가나다·덴마크·나이지리아·마다가 스카로 등 6개국에 대표기구나 대표부를 설립하였다. 이외에는 피지·파푸아뉴기니·바레인·아랍 에미리트연합·쿠웨이트·리비아·마다 가스카르·모리셔스·나이제리아·에쿠아도르 및 폴리네시아 등 미수교국에 대표부를 두고 중화민국이란 정식명칭을 사용하였다. 1991년 말까지 중화민국과 정식국교를 맺은 국가가 29개 국으로 증가했으며, 정부는 세계 52개 미수교국에 수십 개의 대표부를 설치하였고 동시에 10개의 정부 간 국제기구, 769개의 민간국제기구에서의 회원자격을 향유하였다.¹⁵⁾

이밖에 유의해야 할 것은 그레나다·리베리아·니카라과·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대만과 수교 시에 북경과의 외교관계를 동시에 맺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만이 '이중승인'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이미 몇몇 국가의 반향을 얻고 있었다.¹⁶⁾

북경정부는 대만의 외교적 진전에 대해 명백한 불만과 불안한 태도를 표시하면서 대만의 대외관계를 제압하는 입장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다. 중국당국은 각종 여론매체로 대만의 실리외교 정책을 대폭 비판하였다. 북경은 실리외교 자체가 대만의 경제적 자원을 정치적 조건으로 이용하여 실제로 '두 개의 중국' 혹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조장하고 있으며, 대만을 독립적 정치실체로 만들어 통일의 방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엄정하게 비난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타국

15) 錢復, 「恢復我國在聯合國會籍案」, 立法院外交委員會, 第88會期, 1991/10/17

16) 林碧炤, 鄭端躍, 1992, 「臺灣의 實利外交政策」, 『中蘇研究』, 통권 54호, p65

이 두 개의 정치적 실체를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사시로 인정되어 법적 승인을 이루게 될 가능성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만의 국제사회에 참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일정기간 후에 중국이 대만문제를 처리할 때 내정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중국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각국에 '하나의 중국정책'을 표명해 줄뿐만 아니라 대만과 모든 정부수준관계의 교류도 제한해줄 것을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UN과 쌍방관계 그리고 공개성명 등을 통해 각국에 중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반복 요구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 일부분'이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어떤 국가도 대만과 정부관계의 수교나 정부성격의 교류를 단호히 반대하고 대만을 방문하는 어떤 미수교국까지도 중국은 즉시 저지와 항의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실리외교 정책으로 중화민국과 복교한 나라는 8개국이나 되고 중화민국 정부는 외교백서를 통해 유엔 재가입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는 등 날로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하나의 중국(一中)'론을 고집하고 북경정부가 유일합법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중국으로서는 중화민국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인 한국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중화민국의 외교공세의 진전에 큰 타격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과 한국의 수교는 중화민국(대만)의 외교정책 및 성과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단교 후 정부 소유재산 이양의 유형 비교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8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후자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¹⁷⁾ 이는

동시에 중화민국(대만) 정부와 유지하고 있던 외교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치·외교적 변화 또는 여러 법적 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 한국에서 중화민국 정부가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양국의 단교로 인한 정부승인의 철회 및 그 국제법적 효과, 중국-대만 간의 국제법적 관계(대만의 국제법 지위)를 우선 살펴본 후에 학설에 의해 검토하고 정부재산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실행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1. 정부승인의 철회

1960년대부터 국제정세에 따라 서방국가들이 점차 중국공산당과 외교적인 접촉을 시작하였다. 1964년 서방진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던 프랑스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후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1970년 캐나다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중화민국의 국제적인 지위와 외교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버린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 중화민국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이 무엇보다도 유엔 총회 결의 제 2758호였다. 유엔 총회 결의 제 2758호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758)는 1971년 10월 25일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758호(XXVI).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합법적 권리의 회복
유엔 총회는 유엔 헌장의 제 원칙을 생각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엔 헌장의 보장 및 유엔 헌장의 준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함과 함께 중화인민

17)동아일보, 1992/08/24. 1

공화국이 가지는 제 권리를 회복시킨다.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
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의 대표를 추방하기로 결정한다.

— 1971년 10월 25일 제1967차 본회의

이 결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의 회복"을 골자로 하였으
며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에 따라 유
엔에서는 1949년에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일은 중화민국의
가입일인 1945년 10월 24일로 표기된다. 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고집하여 자기가 유일한 중국대표정부로서 이 결의에 반발하여
결국 자진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중화민국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무대의 유엔총회에서 국가자격이 상실되었다. 그 결과는 다른 중화
민국의 수교국도 잇따라 중국공산당을 환영하고 그와 국교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과 수교하려면 중공에 의한 "하나의 중국"원
칙을 지켜야 해서 동시에 중화민국 정부를 부정해야 하고 국교를 단절해
야 하는 것이었다. 물론 당시 중화민국도 자신이 유일한 중국정부를 주
장해서 다른 국가와 중국공산당의 수교 직전에 미리 상대국가와 단교하
는 것을 선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중화민국은 이때부터 국제무대에
서 물러서져 외교적 활동공간이 대폭 축소될 뿐더러¹⁸⁾ 우방국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련의 외교관계를 단절함에 따라 단교에 관한 과제가 주목을 받기 시
작하였다. 단교에 관련하여 국제법적 시각에서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
이 이해될 수 있다.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면 중화민국의 국제
법규범 주체성 또는 국가성이 소멸되고 그에 따라 중화민국이 소유하고

18) 1970년 말에 중화민국과 68개 우방국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있는 재산은 모두 중국에 이양하게 되는가, 아니면 외교관계의 단절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하여 우선 1992년 한국 정부가 중화민국에 대하여 행한 "단교"조치의 국제법적 의미부터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 조약국은 1992년의 중화민국과의 "단교"를 "그의 국가성 부인", 즉 중화민국에 대한 국가승인의 취소 또는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이른바 "중국문제"(the China question)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⁹⁾

소위 "중국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중국(one China)"을 어느 정부(북경 정부 또는 타이베이 정부)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자격을 갖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Crawford 교수는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북경의 중화인민공화국은 각자 하나의 중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견해는 다른 국제법 주체들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거나 더 나아가 명시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²⁰⁾ 북경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하여 대만 당국은 1990년대 이후 점차 "이중승인" 방향을 추구하면서 대만의 국가지위의 확보를 지향하는 변화를 보인다.²¹⁾

따라서 이근관(2006)에서 지적했듯이 1972년에 일본, 1979년에 미국 또는 1992년 한국이 행한 중화민국과의 "단교"는 결코 "대만의 국가성"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대표하는 정부로서의 승인을 대만 정부로부터 북경 정부에로 전환 또는

19)이근관, 2006, 「대만중부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 한국-대만 간 조약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 47권 제 2호, p.260 인용

20)James Crawford, 1979,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p.151

21)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유향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유일한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로서 대만에 부여하고 있던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 이를 북경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것은 외국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도 많이 받아들여졌다. 그 중에 주목될 수 있는 판례는 바로 관화료(光華寮) 사건에 대한 판결들이다. 판결에서 일본법원은 1972년 일본정부가 대북 및 북경 정부에 대한 "정부승인의 전환 또는 교체"로 개념화하고 있다.²²⁾ 재판소에 의하여 1972년에 단교를 정부승계로 파악하는 전제 위에서 정부의 원전승계와 불완전승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에 관하여, 구정부가 완전히 소멸하여 신정부가 성립한 경우(정부의 완전승계)에는 구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모두 신정부에 승계되고, 구정부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고 그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정부의 불완전승계)에 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신정부가 지배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신정부에 승계되고 해석되고 있다.

정부의 불완전승계의 경우에 구정부가 외국에 있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해서는 지배가 미치지 않고, 아직 구정부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신정부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소재하고 있는 외국이 신정부를 승인(승인의 전환)한 경우에는 그 외국은 신정부가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정부가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소유·지배하고 있던 재산(대사관건물 등의 외교재산), 그 외국이 구정부에 인정한 국가권력행사를 위한 재산 (예를 들면, 영사 재판소건물 등)은 승인의 전환 시점에 신정부에 승계된다고 해석하지 않

22)이근관, 2006, 「대만정부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 한국-대만 간 조약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 47권 제 2호, p.260

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이외에 재산, 특히 구정부가 신정부성립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신정부가 지배도 권리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 재산에 관해서는 승인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구정부는 그 권리를 유지하고 그 외국에 있어 그 재산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된다."²³⁾

따라서 1972년에 일본정부가 행한 정부승인은 중화민국 정부가 아직 대만 등지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불완전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근관(2006)은 1992년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의 합법적 대표자격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던 대북정부와 북경정부의 외교경쟁의 와중에 북경정부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결코 전자의 국가성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단지 정부차원의 승인의 전환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하나의 중국" 문제의 법적 성격은 국가승인이 아니라 정부승인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승인의 전환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일본의 많은 국제법학자들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아사다(淺田)교수는 1972년의 단교를 "정부승인의 전환 또는 교체"로 개념화하고 있다.²⁴⁾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판례국제법(判例國際法)이란 책에서 광화료(光華寮)사건 부분을 집필한 타나카(田中)교수도 이 책에서 "중국정부의 승인의 전환", "정부승인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²⁵⁾ 이외에도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법판례연구』라는 교재와 학술잡지 『국제법외교잡지』에서 "정부승인", "정부승계", "승인의 취소·전환" 등의 개념으로 해석하

23)이근관, 2006, 「대만정부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 한국-대만 간 조약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 47권 제 2호, p.261 재인용.

24)이근관, 2006, 「대만정부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 한국-대만 간 조약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 47권 제 2호, p.262

25)同24

고 있다.

여기까지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해 보았는데 북경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곳을 정부승인의 교체 또는 전환으로 파악하는 국가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은 견해를 취하였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역시 판례 및 학설에서 승인의 철회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withdrawal of recognition", "de-recognition of Taiwan" 등의 표현을 쓰고 있으며, 승인의 전환 또는 교체에 있어서 "switching recognition", "recognition of China and de-recognition of Taiwan"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²⁶⁾ 또한 대표적인 국제법케이스북 책에서 1979년 미국과 중국수교의 조치를 "정부의 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s)"의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법학원이 출판한 미국 대외관계법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정부의 승인 또는 수락(Recognition or Acceptance of Governments)"으로 다루면서 "미국은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정부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때까지 중국의 정부로서 승인되었던 대만 정권, 즉 "중화민국"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였다"고 보고 있다.²⁷⁾

결국 1992년 8월에 한국 정부가 북경 정부의 수교 시 중화민국이라는 국제법상의 주체가 소멸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합법적 정부에 대한 승인을 타이베이 정부로부터 베이징 정부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만의 국제법상 지위

26) 다만 표현에서 승인의 철회 또는 전환이 국가가 아닌 정부에 관련되는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27)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3rd ed. vol. 1 (St. Paul, Minn.: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87, p. 86.

중화민국과의 단교가 정부승인의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한다고 하면 승인이 취소된 후 타이베이 정부 또는 대만이라는 실체의 국제법상의 지위는 과연 무엇인지부터 다루어야 한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양안관계나 한국의 남북관계처럼 이른바 분단국 실체 상호 간의 관계의 법적 해석은 국제법상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국제법 지위에 관하여 북경 정부와 타이베이 정부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북경 정부에 따르면 대만은 "하나의 중국"의 영토의 불가분적 일부를 구성하며 단지 "반란지역"²⁸⁾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타이베이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 "이중승인" 정책을 통하여 국가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외교노력을 하면서 20여 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대표권의 경쟁을 벌여온 두 정부 이외의 국가의 실행이나 학설은 대만의 국제법적 지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우선 학설부터 살펴보자. 대만 구홍달(丘宏達) 교수가 지적하였다시피 대부분의 국제법학자는 1990년대 전까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²⁹⁾ 1979년 미국 정부가 수행한 북경 정부의 승인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Victor Li 교수는 국제법인격을 보유한 사실상의 실체로 파악하면서 "대만은 미국에 의해 더 이상 법적 정부 또는 국가로서 간주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일정한 주민과 영토를 통할하며 또한 정부의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³⁰⁾ Victor Li 교수도 다른 저서에서 대만은 국제법인격을 보유한 실체의 사실상의 정부(the

28)"반란지역"은 국제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언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a renegade province"란 용어다.

29)Hungdah Chiu,1992,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Republic of China", Contemporary Asian Studies, 5(112),p.8.

30)이근관, 2006, 「대만정부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 한국-대만 간 조약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제 47권 제 2호, p.265 참조

"de factor government of an entity having international personality")로 파악한다.³¹⁾

사실상의 정부 또는 정권(de facto regime)에 대하여 Frowein 교수는 북한과 대만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국가실행에 따르면, 특정한 영토를 사실상 지배하는 실체들은 제한적 국제법 주체로 취급된다. 이들 실체들에게는 국제책임이 귀속되며, 그들과 조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며, 국가들과도 일정한 종류의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교섭이 국가 간의 통상적인 접촉과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승인이 없다고 해서 국제법 하에서의 모든 지위를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³²⁾

이러한 학설 외에도 정부승인의 전환에 대한 국가실행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1972년 9월 29일에 일본은 중일공동성명을 통하여 북경 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일본 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일본 정부와 중국의 북경 정부 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의 승인을 중화민국정부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정부에 전환한 것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는 승인받고 있던 중화민국 정부가 "승인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 또는 "승인이 취소된 정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 법원의 일련의 판결을 보면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974년 북경 정부가 시카고항공협약에 가입하였는데 그 법적 효과가 대만 지역에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미연방 제9순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31)同30

32)이근관, 2006, 「대만정부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 한국-대만 간 조약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 47권 제 2호, p.266 재인용

"이들 규정 [22 U.S.C. §3303(b)(1), §3303(c) 등 대만관계법상의 관련 규정] 및 대만관계법 전반은, 공식적인 관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과 별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함에 의하여 승인의 취소 전에 이미 대만과 체결하고 있던 조약의 효력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승인을 부여 받은 중국과 이미 체결하였거나 향후 체결될 조약이 대만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어떠한 시사도 준 바 없다."³³⁾

이 글을 통하여 미국은 대만에 대한 정부승인의 취소 이후에도 대만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향유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본과 미국의 판결을 검토함으로써 타이베이 정부에 대한 승인의 취소 이후에도 대만은 여전히 사실상의 정부 또는 정권으로서 국제법적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1972년 8월 일본, 그리고 1992년 한국과 대만 외교관계의 단절은 일본과 한국이 각각 타이베이 정부에 부여하고 있던 정부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규정하여 대만은 국제법 주체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화민국 정부에 대한 승인의 취소 이후에도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로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제법 주체성을 계속하여 향유한다고 봐야 된다.

3. 정부 소유재산 이양 유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화민국 정부는 단교 이후에도 사실상의 정부로서 국제법 인격 주체성을 향유하고 있지만 단교에 따라 각 상대 단교 국가에서 중화민국 정부의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난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다.

33)이근관, 2006, 「대만중부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 한국-대만 간 조약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 47권 제 2호, p.270 재인용

1971년 10월 25일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축출되며 국제법에 따르면 중화민국이름의 해외재산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 접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은 아주 강력한 법이 아니라 외교상대국 간의 협상 및 타협으로 실제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의 승인원칙을 그렇게 규정했지만 상대국가에 따라 정치적인 실행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프랑스, 캐나다,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대사관저를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첫 번째는 일본형이라고 한다. 일본은 1972년 중화민국과 단교하면서 중국공산당을 유일한 중국정부 대표로 인정하며 기존 대사관저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귀속시켰다. 이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일본처럼 이 방식을 따랐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처리방식은 선례가 아니었다. 프랑스는 1964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을 때 이미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당시 중화민국 대사관을 유네스코주재 대만대표부명의로 이전하자 프랑스가 경찰력을 동원하고 강제로 퇴거시킨 후에 중국공산당 측에 넘겨주었다.

두 번째 유형은 미국형이라고 본다. 1979년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가 이뤄졌을 때 중화민국 정부는 대사관저를 주미대만친선협회에 단 1달러의 가격으로 매각하였고 미국 의회도 「대만관계법」을 제정하며 대만정부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이 방법에 대하여 비슷한 처리방식이 채택해 본 적이 있었다. 1971년 캐나다와의 단교 때 중화민국 측은 미리 대사관저를 처분한 선례를 남겼다.

세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유형이다. 1991년 사우디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중화민국 대사관을 대만무역대표부로 개칭함으로써 대만 정부재산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이상 간략하게 각국의 대만대사관저에 대한 처리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단교 상대국과 당시 외교정세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졌다. 따라서 좀 더 자세히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어서 몇 가지 대표적 케이스를 살펴볼 것이다.

1) 1964년 프랑스와의 단교

1960년대 초반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정권의 분화 때문에 소련은 중국에 있는 기술전문가 및 건설지원을 철수하였다. 게다가 1961년부터 연속 3년간 극심한 가뭄이 들어 경제민생고가 매우 심하였다. 이때 대만에 있는 국민당정부가 계속 반격하려고 하는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프랑스가 주동적으로 양국 수교를 알아본 것이 뜻밖의 기쁨이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서방국가들의 고립으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당시 중공과 국민당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에 주의해야 한다. 1960년대 미국이 중화민국(대만)의 방위를 승낙하면서 점차 "사실상 두 개의 중국"(de facto "two China" policy)으로 전환해 가고 있었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중국공산당은 엄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해야 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이 사실상태(de facto)가 법적 사실(de jure)로 성립돼 버리면 미래 중공은 "해방대만"이라는 목적에 방해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중화민국 당국이 미국의 "두 개의 중국" 정책을 동의한다면 자기가 현황에 만족하는 것을 선포하는 뜻에서 미래 대륙을 반격하고 전 중국대륙을 통치하는 목표를 포기하며 중국통치의 정통(正統)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양쪽은 자기가 "하나의 중국"은 유일한 합법대표에 대한 입장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프랑스와의 수교를 간절히 바라기에 프랑스와 중화민국 정부의 관계에 양보하고 프랑스에 중화민국과의 단교를 요구하지

않았다. 마지막의 협의내용에서 "중화민국이 프랑스와 단교하고 선포하면 프랑스가 중화민국 정부와 단교하기를 승낙한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중공과 프랑스가 수교한 후 중화민국 정부가 프랑스와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프랑스가 자발적으로 중화민국과의 현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뜻이었다.

1964년 1월 27일 발표한 "중국과 프랑스의 수교공포문" 안에 파리와 함께 중화민국과 단교를 선언해야 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당시 전 세계가 중공은 "두 개 중국"을 반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민주진영의 만형인 미국은 이 소식을 알자마자 금방 프랑스에 자유와 세계의 이익을 위반한다고 비난하며 프랑스에 압박을 가하며 장제스에게 절대로 자발적으로 프랑스와의 관계를 끊지 말라고 권유하였다. 미국의 입장을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중공 정부는 중화민국정부의 단교를 수교 전제로 견지한다면 프랑스가 이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중공은 프랑스 대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는 프랑스의 처지가 난감하게 되지만 그 잘못이 중국공산당에 귀결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프랑스와 중화민국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중공은 "두 개 중국"을 받아들이는 뜻을 의미한다. 또한 "두 개 중국"은 사실상 미국이 유엔에서 대만의 의석에 지원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북경 정부를 승인한 뒤 다른 국가들도 따라서 "두 개의 중국"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보며 프랑스와 중화민국이 희망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3일 중국 공산당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미국의 전략을 무너뜨려버렸다. 그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국인의 정부대표로서 북경정부가 파견하는 대표 외에는 파리에서 다른 중국외교 대표 신분으로 나오는 것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분명히 "두 개 중국"은 평화·공존하는 모드를 거부하는 뜻이었다. 그러므로 중화민국

정부는 부득이 중공과 프랑스 수교 이 주 뒤에 국제사실을 받아들이고 주 프랑스 대사관 국기를 내리면서 인원들을 철수시켰다. 프랑스와의 단교 후 얼마 되지 않아 잇달아 다른 우방국들과의 단교가 이어졌다. 같은 해 4월 17일 콩고와 중공의 수교, 9월 19일 세네갈, 10월 2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다음 해 4월 8일 프랑스어계 국가들도 도미노가 연달아 쓰러지듯 중화민국과 단교하였다.

1964년 단교 후에는 중화민국과 프랑스 관계가 전면 중단되다가 1972년 중화민국 정부는 양방 실질적인 관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사단법인 「법화경제무역관광추진협회」(ASPECT)를 등록하였다. 또한 1976년 「아시아무역추진 파리사무소」를 설립하며 양자 간의 경제 사무를 담당하였다. 다년간에 걸쳐 마침내 1995년 프랑스 정부는 「법화경제무역관광추진협회」가 「주프랑스-타이베이대표처」(Bureau de Représentation de Taipei en France)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1971년 캐나다와 단교

1970년 10월 13일 11시에 캐나다 하원은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를 선포하였다.³⁴⁾ 수교공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캐나다정부는 주권과 영토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및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1970년 10월 13일부터 서로 인정하고 상호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중국정부는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는 분할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라고 거듭 천명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 주

34)Statement by SSEA Mitchell Sharp. E.Blanchette, 1970. "House of Vommons", *Canadian Foreign Policy*, pp.138-140.

의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다.

양국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서로 대사를 파견하고 호혜 평등의 기초에 국제관례에 의하여 각자의 수도권에서 상대방의 대사관을 건립하고 또한 임무관련에 모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³⁵⁾

이에 관하여 중화민국 대사 薛毓麒는 정부지시에 따라 구두항의를 표시하며 외교장관에게 회면을 달라 항의를 제출하려고 하였다. 캐나다 정부 측은 중화민국 대사관 인원들이 2주 동안에 공무를 끝내고 4주 이내 개인사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13일부터 중화민국은 더 이상 중국의 대표로 간주될 수 없다며 그 날 11시부터 캐나다 국내에서 중국이름으로 등록된 중국재산을 모두 중국공산당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캐나다 정부가 그 재산을 보호하고 중공에게 이전하겠다.

캐나다는 이때부터 중공을 향하고 중공수교에 관한 캐나다 유형을 창출하였다. 이후 이탈리아(1970/11/6), 칠레(1970/12/15), 벨기에(1971/10/25), 페루(1971/11/2), 레바논(1971/11/9), 아이슬란드(1971/12/8), 몰타(1972/1/31), 아르헨티나(1972/2/16), 그리스(1972/6/5) 등 국가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에 따라 중국공산당과 수교를 하였다.

정부승인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정권은 구정권이 남아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중화민국은 공산당에 인수할 수 없도록 국가재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다. 수교에 따라 13일 이후 이 주 안에 캐나다에 있는 중화민국의 대사들은 신분이 상실

35)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加拿大政府關於中、加兩國建立外交關係的聯合公報〉, 1970/10/13,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網站 : 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18/1207/

될 것이고 중화민국 정부도 대사관의 폐관 명령을 내렸다. 철수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사관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사 薛毓麒은 1969년 미리 대사관청의 구매자를 찾아 놓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상의하여 매듭지었다.

- (1) 명의 변경 수속을 처리하며 관사 대금을 받는다.
- (2) 구매주가 상징적인 1원으로 임대료를 받고 관청에 6개월 동안 사용권을 준다.
- (3) 명의변경 등기 후 3개월 이내 원가로 재구입할 권력이 있다.

사실상 구매자는 준 조건들이 아주 위대하다고 볼 수 있다. 양측이 50만 원(캐나다 달러) 가격으로 7월 15일에 결제하지만 임대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화민국 주 캐나다 대사관에 대한 매매는 결국 캐나다 기자가 부동산등기를 찾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사 薛毓麒은 집이 남아져서 판매하고 나서 새로운 주소를 구하려고 설명하였다. 마침 구매자가 새 집을 구할 때까지 계속 사용해 주도록 하니 판매되었다. 그러므로 결국 중국공산당의 대사들이 다른 곳을 찾아서 대사관을 설립해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중화민국 정부 재산의 처리 방법은 선례를 남겼고 이후 중화민국과 다른 국가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때도 이 방법을 참작하여 처리하고 공적 재산을 미리 매각하여 장래 되사오기를 통해 재산권을 유지한다.

그러나 정부 재산이양에 대한 캐나다 사례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우선 캐나다와 중국공산당의 수교 예비회담을 13번이나 벌인 점이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중화민국 측에게 중공과의 예비회담 결과를 알려 주도록 약속하였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중화민국에 대해 취하는 입장도 주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 주권에 대한 주장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으며 "주목한다"(take note of)며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중화민국 정부는 캐나다와 중공의 수교 케이스에 재산에 관한 처리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이나 상대적으로 더 여유로운 배경이 있었다.

3)1972년 일본과의 단교

1972년 9월 29일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중화민국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일본은 중공과 수교했지만 중공이 제일 신경을 썼던 대만 영토 주권에 대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공은 일본과 수교하기 전에 일본에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란 것을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공식적 수교 성명서 안에 일본 측은 중국의 주장을 이해하며 승인(recognize) 대신 존중한다는 애매모호한 글자(understand and respect)로 표시하였다. 일본 측에 의하면 당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대만 및 평후제도 주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일본은 자기 영토 범위 외의 대만 및 도서 주권을 중공에게 승인해 주는 법적 입장이 없다고 설명하였다.³⁶⁾ 국제법에 따라 영토의 귀속은 당사국만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제3국이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만약에 일본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일부를 승인한다면 인민, 화물, 항공기, 선박 등 대만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중공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의 주장을 인증해 줄 수 없었다. 또한 외교적으로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승인해 주면 「미일안보조약」과 저촉되는 가능성이 있으니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쉽게 동의할

36)일중공동성명서(日中共同聲明) 제3조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거듭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이해하고 존중해 주고 포츠담 선언 제8항에 따른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은 대만 영토에 대한 입장을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처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주일(도쿄)대사관은 9·18사변 후에 만주국이 일본에 합법적으로 구매되는 것이었다. 일본 패전 후 만주국가가 소멸되자 자연스럽게 대사관의 소유권이 중화민국 정부에 귀속되며 일본과 복교 후에 중화민국 정부는 그 토지 및 건물을 계속 대사관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공산당의 몇 번의 접촉 후에 중공은 주일대사관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이 드러나 일본 좌파 세력들도 적극적으로 대사관의 소유권을 중공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일본 다른 정치 세력들은 중화민국과 단교했지만 토지소유권 쟁의에 대하여 증거 위주로 따져야 보다고 주장하며 대사관은 중화민국에 귀속되어 있으니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처분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과 중국공산당이 9월 29일 연합성명서를 발표하며 3개월 안에 양측 대사관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1972년 12월 28일 중화민국 정부는 모든 주일대사관을 폐관하였다. 폐관 전 날(27일) 중화민국 주일 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중화민국이 보유한 산업은 중화민국의 공식 동의를 없으면 일본 정부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안 된다고 전해주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다른 불법적인 사용 및 처분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중화민국 정부는 절대로 승인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일본정부에 귀결한다고 밝혔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이런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해주는 동시에 타이베이와 도쿄에서 공식 신문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였다.³⁷⁾ 그러나 27일 밤에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하여 중화민국의 단방적인 조치라고 하며 그 내용을 일본이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니 서류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37)中國時報, 中央日報, 1972/12/28

중화민국 외교부는 대사관의 대한 일본 정부 측의 담보를 받지 못하며 주일대사관이 중공에 이양되는 경우 몇 가지 대응방식을 생각하였다. 첫째, 성명발표로 일본 측은 친공산 행위를 비판한다. 둘째, 일본 주화대사관을 동결하고 일본 측의 사용, 임대, 양도 등 처분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마지막은 제일화교를 동원하며 일본에 항의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상 모든 방법이 보복 조치에 속하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대사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과 단교하면서 중국의 유일대표권을 인정하며 기존 중화민국 대사관저를 중공 정부에 귀속시켰다. 이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이 방식을 따랐고 이는 중화민국 정부가 최악 단교 모드를 여기는 일본형이라고 부른다.

4)1979년 미국과 단교

1978년 12월 16일 새벽 2시 워싱턴과 베이징은 동시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수교하고 중화민국과의 단교 또는 대만과 미국 공동 방위 조약도 함께 폐지하는 소식을 선포하였다. 이 소식을 대만인들에게 알려지자 수백 명 군중이 타이베이 미군 클럽 앞에서 항의시위를 거행하고 자동차 13대를 훼손하고 창문 유리까지 켰다. 전국의 대학교 교내에서도 미국을 비난하고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서명 및 기부 활동을 하였다. 미국 대통령이 27일 협상 대표 크리스토퍼 (Warren Christopher) 를 타이베이로 파견했는데 그는 타이베이에 도착하자 청년학생들에게 항의의 표시로 계란, 토마토와 돌맹이 등 세례를 받았다. 결국 대만 당국과 협상도 못 하고 안전 이유로 29일에 미국에 돌아가 버렸다.

미국과 단교했을 때 중화민국 주미 대사관저를 확보하였고 중국공산당에게 접수되지 않은 것이 매우 특별한 사례였다. 당시 중화민국 주미 대사관 건물은 쌍예원(雙橡園Twin Oaks)이라고 부르고 국가 소유재산에

속했다. 1888년 Gardiner Greene Hubbard가 이 건물 토지를 구입하고 유명한 건축가를 쓰고 별장으로 설계하였다. 1930년대 Hubbard의 가족들이 이 별장을 유명한 인사에게 임대해 주었고 1937년 8월 중국정부 신임 왕정정(王正廷) 대사에게 임대, 다음 날 미국 대통령에게 알려 주었다. 그 다음 10년 동안 쌍예원을 계속 왕정정(王正廷)대사 그리고 후임 대사 호적(胡適), 위도명(魏道明)에게 임대해 주었다. 1947년 구웨이쥘(顧維鈞) 대사는 중화민국 명의로 45만 달러로 Hubbard 가족에게서 쌍예원을 구입하였다.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에 들어간 후 쌍예원 소유권은 여전히 중화민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1978년 12월 5일 미국 대통령 카터가 예고 없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기로 하고 1971년 1월 1일부터 중화민국의 외교관계를 중지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쌍예원이 대사관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국가재산을 중국공산당에게 빼앗길까 봐서 1978년 12월 23일(미·중공수교 1주 전) 쌍예원을 미국 민간단체인 자유중국지인협회(自由中國之友協會)(Friends of Free China Association)에 판매하였다. 당시 중화민국 정부는 국민당 정부의 강력한 지지자인 Thomas Gardiner Corcoran에게 위탁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20달러로 판매하였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쌍예원을 중공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주미대사(沈劍虹)는 입법으로만 국가재산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David Boren 상의원과 Robert Lagomarsino 하의원의 도움으로 1979년 4월 미국 국회에서 <대만관계법>을 통과하였다. 그 법에 따라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더라도 대만통치당국(즉, 중화민국정부)이 1978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하거나 소유한 무형 및 유형 재산에는 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대만당국이 이후 취득할 재산에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였다.

일 년 뒤 그 협회는 자금회전을 이유로 쌍예원을 판매해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는 200만 달러로 구입하고 1986년 2월 5일 미국 정부에 국가고적(건물유산)으로 등록하며 중화민국 주미 대표처(사무소)로 사용해 오고 있다.

1979년 1월 1일 중국과 정식 수교한 뒤 대만은 같은 해 2월 23일 워싱턴에 북미 사무협조위원회를 개설하고 미국은 타이베이에 미국제대협회를 각각 설립하였다. 미국과 중공의 수교직전 중화민국대사관저를 협회에 단돈 20달러에 팔아버리고 미국국회는 사후 대만특별법(대만관계법)을 제정하고 이 거래를 인정해 주어 대사관 처리를 해결하였다. 이와 같은 대사관 처리 방식을 미국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방식은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대만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화민국 정부의 권리의무 문제에 대한 처리이며 국내법 효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전통적으로 국제법 영역 안에 있는 정부계승에 대한 처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5) 1990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단교

1946년 11월 15일에 중화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만-사우디아라비아 우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식 국교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국가라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1949년 국민당정부가 대만에 간 후에도 양방이 계속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57년 5월 30일 양국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향상시키며 중화민국 정부는 수도 리야드에서 중화민국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설립하고 대사를 파견하였다. 1971년 10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총회에서 중화민국이 계속 중국대표권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했지

만 투표 표결에서 실패하였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유일한 중동국가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대표로 하고 중화민국이 「대만」 명의로 유엔에서 의석을 가지는 것을 주장한 바도 있었다. 즉, 이중대표권에 관한 문제였다. 물론 유엔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방 당사자가 다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던 몇 안 되는 소수 중동국가 중 하나였다. 1970년대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에서 10대 건설을 추진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차관을 제공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한 고속도로는 중-사대교라 명명되기도 하였다. 1977년 중화민국 총통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였는데 이것은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한 후에 첫 방문이었다. 1970년대 ~ 80년대 양국이 농업·수력 등 건설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빠르게 발전되었다.

그러나 깊은 외교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990년 7월 22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는 동시에 중화민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관계를 중지하는 것을 선포하였다. 비록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공과 수교했지만 이슬람교법에 의해 중화민국 대사관은 중공에게 넘겨주지 않고 명칭만 「대만무역대표부」로 바꾸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1990년 7월 19일에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양국에서 새로운 대표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비망록으로 서명하였다. 이를 근거하며 1991년 2월 13일 대만 정부는 리야드에서 「주 사우디아라비아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를 설립하며 1992년 10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이베이에서 대등하는 「사우디아라비 타이베이 상무사무소」를 설치하였다.³⁸⁾

38) <http://www.mofa.gov.tw/default.html> 중화민국 외교부 참조

IV. 한국 정부가 채택한 방식 및 교섭 과정 검토

1. 대만대사관의 처리

1992년 8월 한중수교를 앞두고 명동한복판에 있는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³⁹⁾ 건물과 땅 등 대만정부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 중국으로 이양된다고 발표해 이 재산들의 이전절차 등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땅은 2천 9백 73평으로 평당 5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며 당시 땅값만 1천 5백억 원에 이르렀다. 한 때 중화민국(대만) 정부가 이 땅의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져 부동산업계 및 재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으나 매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⁴⁰⁾

8월 22일 출간한 <경향신문>에 중국(중공) 측은 수교 전제 조건으로 대사관의 자동 귀속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나 대만 측은 단교 조치 이전 매각 또는 무역대표부 사무실로 사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법관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내세우며 관례에 따라 중국 정부에 넘길 방침이었다. 한 신문에서 정부 관계자가 "대사관 건물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그 국가와 국민의 소유"라며 새롭게 국교관계를 맺은 중국에 귀속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날 출간한 <동아일보> ⁴¹⁾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21일 한중 수교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제법상 그 수교국의 국내재산은 새로 승인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상례라고 밝혀 역시도 대만대사관이 중국에 귀속될 가

39)서울 명동 2가 83의 7에 위치한 대만대사관은 부지만 2천9백73평으로 시가 1천5백억원이(평당5천만~6천만원)이 넘으며 옆의 한성화교부지까지 포함할 경우5천1백46평으로 총 3천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었다.

40)경향신문,1992/08/22,18

41)동아일보,1992/08/22,4

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동아일보에서는 대만 측이 대사관 양도를 물리적으로 거부하거나 국내 대만관련협회에 상징적인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이를 제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아일보는 대만정부가 1991년부터 한·중 수교 후 대만대사관의 중국귀속을 막기 위한 사전 매각움직임을 보여 왔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협조요청까지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였는데 원매자가 선뜻 나서지 않은데다 중국 측의 반대와 한국정부의 미묘한 입장 등이 겹쳐 결국 매각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 중국명동2가 83의 7현 대만대사관 부지는 1882년 조선과 청나라 간 체결한 「조·청 수륙무역장정」(朝·淸水路貿易章程)에 따라 당시 조선상무위원으로 부임한 진수영이 명동의 위치에 부지를 구입한 것이 시초이며 1885년 원세개(袁世凱)가 부임, 자신의 관저인 총리아문을 개설하면서 공관면적이 6천4백 평에 달하였다. 청나라가 사들인 뒤 그 후 국민당정부와 대만정부가 재산권을 행사해 왔다. 그 후 1909년 부지 내에 현 한성화교학교가 들어서고 67년 코스모스백화점에 1천 평이 매각되었다.⁴²⁾ 25일 경향신문에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중수교로 가뜩이나 예민해진 대만정부가 재산양도를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당시 한국 정부는 대만정부의 재산 처리를 위해 과거 미국과 일본 등이 대만과 단교 시 처리했던 방법을 참고하며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각국과 대만 단

42)당초엔 부지가 6천4백 여평에 달했으나 67년 현코스모스 백화점자리를 대만정부가 매각, 지금은 대사관저 2천9백73평과 83년에 세운 대사관 옆의 한성화교부지 2천1백73평등 5천1백46평이 남아있다. 인근 땅의 공시지가를 토대로한 추정지가는 평당2천 8백만원으로 1천 4백40억원 정도된다. 그러나 이일대의 실거래가는 평당7천만원 이상을 호가해 실제가격은 3천6백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대사관 근처에 2백 여평의 학교도서관과 서울중구 수표동11에 3백10평, 부산, 인천 등에 있는 화교학교 등을 합치면 전체 대만정부 소유의 부동산 가격은 7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교 때 대만대사관저의 처리 방법도 정리하며 아래와 같이 대개 3가지 유형으로 처리된 것을 기록하였다.

첫째는 1964년 프랑스의 경우이다. 중국과 수교한 뒤 대만정부가 대사관저를 유네스코주재 대만대표부로 명의를 바꾸어 재산을 중국정부에 귀속시키지 않자 경찰을 동원, 강제 퇴거시켜 중국정부에 넘겨주었다. 일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중국 정부에 승계시켰다. 둘째는 미국의 경우, 1979년 1월 1일자로 중국과 정식수교한 뒤 대만은 같은 해 2월 23일 워싱턴에 북미 사무협조위원회를 개설하고 미국은 타이베이에 미국재대협회를 각각 설립하였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수교직전 날짜로 대만대사관저를 이 협조위원회에 단돈 1 달러에 팔아 버렸고 미국은 대만 특별법을 제정, 이 거래를 인정해 해결하였다. 대만정부로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재산을 중국에 넘겨주기를 원치 않고 있었으나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중국과 수교하고도 대만대사관은 넘겨주지 않고 명칭만 「대만무역대표부」로 바꾸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신문의 제목은 "모든 대만자산 중국에 귀속"이며 신문의 끝에 한국 정부는 프랑스와 일본이 채택한 방식으로 대만정부의 재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어제까지 친구로 지낸 대만대사관 관저에 언젠가 경찰을 투입해야 할 실정이라는 쓸쓸함을 전달하였다.

결국 1992년 8월 한중수교로 인하여 갑자기 관심을 끌던 대만대사관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시키게 되었고 <매일경제> 9월 1일 신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 명동 구대만대사관에 입주하는 날짜가 오는 10월1일로 확정된 것을 보도하였다. 이제 10월 1일부터는 지난 49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오성홍기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펄럭이게 된 것이다. 중국 측이 정한 입주 날짜인 10월 1일은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 모택동 당시 국가주석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중국의 창건 기념일이라는 점을 의미하였다. 동시에 입주 날짜는 중국 정부가 원주인인 대만 정부를 한반도에서 또다시 밀어내고 안방을 통째로 차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국공내전에서의 승리라는 역사적 사실을 대사관 명동 입주 날짜와 맞춤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볼 수 있다.⁴³⁾

2. 한중수교 회담

이상 한국 정부가 명동에 있는 대만대사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 보았다. 그런 결과는 사실상 수교 전에 예비회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회고록을 통하여 당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교섭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인 첸치천(錢其琛)이 퇴임 후에 쓴 <열 가지 외교 이야기> 중에서 한중수교에 관한 5장부터 분석하도록 한다.

중공은 공산주의로 건국하며 민주주의 국가들과 수십 년씩 대립해 왔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 점차 해빙이 되었지만 서울로의 첫 행보는 1991년까지 이르렀다. 1991년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3차 장관급 회의는 바로 그 시작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이상옥 외무장관과 각 외무장관들은 회의에서 모든 발언이 정확한 용어로 새로운 세 회원(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타이베이, 홍콩)의 APEC 가입을 환영하는 인사가 중공 측에서는 매우 마음에 들었다. 또한 회의 기간 동안 한국은 약속을 지켜 대통령 환영 연회를 포함한 어떤 행사에도 서

43) 매일경제, 1992/09/01, 23

을 주재 대만 '대사'를 참가시키지 않았다.

첸치첸(錢其琛) 부장은 APEC 가입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또한 당시 중국의 기본 원칙이 하나의 중국이란 전제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주권 국가의 신분으로 가입하며 대만과 홍콩은 지역 경제 주체로 가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중국의 가입문제에 대해 대단할 열정을 보였다. 첸 부장은 당시 한국은 비록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미 동아시아의 이후 경제 발전과 정치 구조의 변화라는 전망하에 중국과의 수교가 한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최국이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중국의 가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의 교류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된 점을 지적하였다.⁴⁴⁾ 1991년 10월 2일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동시 가입에 관한 양해 비망록에 서명되었다. 대만은 "중국 타이베이"의 호칭을 사용하며 경제 업무담당의 장관만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정치적대표로 "외교부 부장"과 "외교부 부부장"의 회의 참가는 불허되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서울에서 열리는 제 3차 장관급 회의에서 서울 주재 대만 "대사"가 참석할 수 없다는 협의를 맺었다.

첸 부장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는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중국과의 수교(취임 초 제시했던 북방정책 목표)에 비교적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은 몇 년 동안 많은 한국의 고위층 인사들이 사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양국 수교에 일조하겠다는 바람을 많이 피력하였다고 말하며 중한 수교 실현은 당시 이미 한국의 한 조류가 되는 점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첸 부장은 책에서 중국과 한국 수교의 난점은 양국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과 수교는

44)첸치첸. 2004. 『열 가지 외교 이야기』. 서울 : 랜덤하우스중앙. pp.145

중국에 유리하겠지만⁴⁵⁾ 우방국인 북한의 태도 및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면 남북 양방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또한 국제회의와 스포츠 경기에도 함께 참가하곤 하였다. 국제적으로 봐도 남북한과 동시 수교한 국가들도 이미 100개를 넘어서는 것이라서 중국과 한국의 해빙 시기가 된 듯하였다.

한중수교는 5월부터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비밀 유지를 위하여 한국은 먼저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자고 하였다. 서울에서 하면 보는 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수교협상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 1차 접촉에서 한국은 다급하게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수교 문제를 끄집어냈다. 중국의 수교원칙은 한국에 대만과의 단교, 조약 폐지, 공관 철수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은 처음에 동의하지 않고 대만의 "대사관"을 "연락처"로 격하하는 등급의 하향 조정을 시도하였는데 중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1차 접촉은 이대로 끝났다.

제 2차 협상도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은 수교 원칙을 다시 강조하며 이번에 한국이 다소 양보하였으나 그 동안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된 점을 내세워 한·중 수교 이후에도 한국과 대만이 모종의 특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중국은 이것이 한국의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느꼈는데 기존 방침을 견지해 나가면 결국 답판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 3차 답판을 서울에서 열자고 제의하였고 한국은 이에 동의하였다. 제 3차 답판 회의에서 한국은 중국의 수교 원칙을 받아들여 양방은 수교 문제에 합의하는 동시에 대외에 발표하지 않은 비망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 차례 협상은 채 2개월도 걸리지 않아 6월 말에 모두 끝이 났다. 단지 양국의 대표가 서

45)1988년 5월에서 9월 사이 덩샤오핑은 중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유익무해하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양방 모두 유리하고 정치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중국의 통일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로 만나 수교에 성명하고 이어 외무장관의 공식 발표 시점을 확정하는 일만 남은 것뿐이었다.

한편 한중수교에 대하여서는 한국 전 외무장관 이상옥이 출판한 <전환기의 한국외교> 라는 외교회고록에 기록해 두었다. 이 책의 제 3부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다루고 있기에 이 책을 통해 당시 상황의 맥락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한중수교의 실마리는 당시 관련 정세의 긍정적 진전부터 찾아야 된다. 우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것과 APEC 각료 회의의 서울 개최를 비롯하여 한반도 관련 긍정적 정세 진전을 보였다. 한국과 중공은 수십 년 간 동안 정치이념으로 대립해 왔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가속화와 대아시아 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한 후 한중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상옥 부장에 따르면 1992년 1월부터 중국 측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국 외교부가 1월 4일자로 중국 언론기관에 보낸 통첩을 통해 "남조선"을 "한국"이라고 표기해도 좋다고 지시하였다. 이는 중국의 조선(북한)쪽으로만 기울어졌던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과의 수교시기에 관한 질문에 중국으로서는 1992년 말까지는 한국과 수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북한 측과도 협의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역시 한중수교의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옥 부장은 당시 중국과의 수교를 너무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 한국 국내 일부의 신중론과 대만 및 북한으로부터 예상되는 반발과 방해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한중수교는 계속 의역하고 착실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과의 수교 시기점이 매우 중요하며 수교는 1992년 12

월의 대통령 선거, 1993년 2월의 신정부 출범 등 국내 정치 일정을 감안해서 1992년 중 조속히 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ESCAP 총회를 계기로 한국 외무장관이 첫 중국(베이징)을 방문하게 되었다. 세 번째의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관계정상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비밀리에 수교 교섭을 위한 단독 회담에 합의하였다. 이상옥 부장의 회고록에서 중국 치엔 부장은 한국과 대만에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한중수교는 중국의 통일에 유념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수교 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명시된 선례를 언급하였다. 이에 대응하며 이 부장은 한중수교가 결정되면 한국과 대만 간의 관계는 조정될 것인 바,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수교 교섭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중수교에 대하여 이것은 단지 한국과 중국 두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으며 한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문제였다. 특히 한국과 대만(중화민국)의 1950년대부터의 맹방관계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반공의 자유민주주의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었고 이같이 오랫동안 맹방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 중 미국과 일본은 앞서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대만과 정치적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1990년대 들어 대 대만관계의 의리와 현실의 양난에 빠졌다.

90년대 대만은 탄력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방법으로 외교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무실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이 동유럽 및 구소련 일부 국가들에 대한 외교 공세를 강화하여 그 결과 발트 3국 중 라트비아와 영사 관계를 수립키로 한 것은 중국에 큰 충격을 주었으

며 중국은 대만이 라트비아 사태가 선례가 되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우려하였다. 이상옥 부장은 대만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는 결과적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대응책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수교를 서두르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대만(중화민국 정부)도 한중수교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만 입법원 대표단은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경우 중화민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였다. 노 대통령은 개인적인 소견이라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옛 친구를 버리는 것은 동양적인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며 새 친구를 사귀어도 옛 친구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게 도리라고 본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은 그 후 대만 측에 의해 여러 차례 인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상옥 부장은 중화민국 김수기 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발전과 수교를 계속하여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중화민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시 김 대사는 중화민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 노력에 관한 언급 부분만을 부각시켜 대외에 발표하였다. 한중수교의 추진에 따라 대만 측의 반응도 점차 민감해졌다. 이 부장은 김 대사에게 중화민국과의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중관계 발전 상황을 종전과 같이 중화민국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때 타이베이 외교부에서도 한중수교가 불가피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상옥 부장은 책에서 "한중수교 신중론"을 다루고 있었다. 소위 "한중수교 신중론"은 오랫동안 특별한 유대 관계를 맺어 온 우방을 저버려서는 안 되며 국가 간에도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정서에 호소하면서 중국과 수교하더라도 타이완과의 기존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수교 시 대만과의 단

교를 요구하면 한국도 중국에 북한과의 단교를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 이 부장은 대만 측은 한국 국내 일부의 이러한 신중론이 더욱 확산되어 정부의 대중국 수교 노력을 견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책에서 대만 측은 1991년 5월부터 "중국은 하나이고 중화민국만이 유일한 정치실체"라는 정책을 "중국 내부에는 중공과 중화민국 두 개의 정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이때부터 대만이 중국을 정치실체로 인정하여 다른 나라와 수교하면서도 중국과의 단교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과 수교 시 대만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여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냉엄한 국제 정치와 외교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도 함께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여 왔으며 중국과 수교 시 어느 나라도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국 내 일부 언론에 중국이 한국에 요구할 것이 많고 다급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 부장은 이것은 중국을 잘 모르고 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한중관계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중국이 개혁 개방을 위해 기본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원칙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임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한국 국내의 대중국 수교 신중론은 또한 대만의 적극적인 무실외교의 전개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수교 결단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다.

1992년 2월초 외무부는 한중수교와 대만문제 관련, 각국의 사례, 수

교 후 주요 국간의 비공식 기구 유지 현황, 중화민국의 대외관계 유지 형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수교 시 단교를 전제로 한 대만과의 관계 조정이 불가피함을 보고하고 단교 후 타이완의 관계 조정(비공식 관계로 전환)에 관한 몇 가지 방안을 노 대통령에게 제시하였다. 동시에 한중수교 타결을 전후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만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상옥 부장은 수교 과정에서 대만과 북한으로부터 예상되는 반발과 방해 때문에 수교 교섭이 끝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밀 유지 곧 수교 교섭의 성과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992년 4월 한중 외무장관 회담 후에 김수기 대사는 수교 교섭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가를 캐물었으나 이 부장은 이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과와의 단독 회담에서 수교 교섭 개시 문제가 논의된 것은 교섭 완료시까지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토로하였다.

이상옥 부장의 회고록에 의하면 1992년 4월 하순부터 한중 양국의 수교 교섭을 위한 준비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 예비회담(1992.5.14.~15 베이징)에서 중국 측은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확고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으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국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언급하고, 다른 나라들과 수교할 때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을 수교 교섭의 기초로 할 용의가 있으나, 한국이 오랫동안 대만과 특별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교 후 대만도 "최고 수준의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게 되면 과거의 북한 일변도 정책으로부

터 남북한과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2차 예비회담 (1992.6.2.~3 베이징)에서 중국 측은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주장하면서 타이완 문제의 해결이 수교의 전제가 됨을 강조하였다. 한국 측은 대만 문제에 앞서 한중수교 후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최대한 배려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중국 측의 명백한 지지 표명을 거듭 요구하였다. 양측은 한국에 있는 대만 대사관 부지 및 건물 등 재산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한국 측은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교 후 한국이 베이징에 설치할 대사관 및 대사관저를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는 데 중국 당국이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과 베이징간의 직항로 개설 등을 위한 항공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도록 요청하였다.

제3차 예비회담 (1992.6.20.~21 서울) "하나의 중국"과 대만문제 관련하여 중국은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이며, 대만 측이 중국의 불가분인 일부분임을 승인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낙찰되었다. 양측은 수교 후 한국과 대만 간의 비공식 관계 유지 및 민간 항공 문제, 한국 내 대만 대사관 및 영사관의 토지와 건물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중국 측에 이양하는 문제, 중국내 한국 대사관과 관련 시설에 필요한 대지 제공 문제, 한중간의 기존 민간 협정들을 정부간 협정으로 대처하는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여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회담과 공동 성명 가성명 (1992.7.29. 베이징) 8월 24일 아침에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발표하기로 합의되었다.

1992년 7월 중국 첸치천 부장은 비밀리에 조선(북한)에 방문하며 한국과 수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달라고 하였다. 첸 부장은 김일성에게 한중수교는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전달하며 동시에 이는 중국의 전략의도도 담고 있는 것이라며 설명해 주었다. 그는 "우리는 귀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중국은 반드시 대만의 국제외교공세를 타격해야 한다. 옛 친구로서 우리의 의도를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중국과 수교 교섭을 7월 말에 끝내고 수교 공동 성명을 8월 24일 베이징에서 서명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만과의 연례 경제 각료 회담을 예정대로(8.18~21)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수교 촉진 관점에서 수교 교섭을 극비리에 진행하여 수교 교섭이 끝난 후 대만과 북한에 적절하게 통보하기로 합의하여 그 후 외교 경로를 통해 수교 발표가 임박함 시점에서 각각 공식 통보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대만 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을 때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발생하였다. 사실 한국 정부는 대만 측에 통보하기 전에 이미 선례를 연구해 놓았다. 이 부장은 책에서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였다.⁴⁶⁾ 한국 정부

46) 일본은 1972년 9월 29일 다나카 수상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의 수교 공동 성명에 정식 서명하기 10일 전에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전 외상)를 정부 특사로 타이베이를 방문케하여 장경국(蔣經國) 행정원장 등 지도자들을 만나 일본과 중국 수교에 대한 일본 정부 방침을 설명케 한 바 있었다. 그 때 대만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 시이나 특사가 계란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으며, 대만 측은 일본 정부의 '신의 배반'과 '자유 민주 진영 포기 처사'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수교 발표 후 일본 선박의 입항 제한,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류 수입 중지 등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상하이 공동 성명발표가 있는 후 정식 수교는 1978년 12월 15일자로 이루어져 카터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타이베이 주재 미국 대사가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장경국 총통을 방문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을 통보하였다. 장경국 총통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수년간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유지와 조약 의무 준수를 계속 확인해 왔으나, 약속을 저버리고 조약을 파기"하였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조치는 "인류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일대좌절이며, 세계

도 중국과의 수교 발표 전에 특사를 타이베이에 파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일본과는 달리 대만에 대해 큰 대응수단을 갖지 못한 형편에서 대만 측을 무마하는 데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수교 후 빠른 시일 안에 별도로 고위 사절단을 타이베이에 파견하는 것이 최선법이라고 여겼다.

3. 한국-대만 단교과정의 특징

한중수교에 관하여 한국 외무부는 대만 측에 대한 공식 통보를 두 차례에 나누어 1차 통보는 8월 18일(수교 발표 1주일 전), 2차 통보는 8월 21일(수교 발표 3일 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8월 18일 오전에 대만 측에 한중수교에 관한 1차 통보를 하자 타이베이로부터 예상대로 즉각적이고 거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당시 장효엄(章孝嚴) 차장은 한국이 금후의 한국과 중화민국 관계를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전례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면 "큰 착오"이며 한국 측이 대중국 관계를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표명하였으나, 중국 양안 관계 외 국제 사회에서 전례가 없었던 특이한 사례이므로 전통적인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는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해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를 것이며, 노태우 대통령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나 중화민국과 한국 관계에서는 영원한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장 차장은 "중화민국 대표부"라는 명칭이 없는 한 어떠한 형태든지 고려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서울에 있는 대사관 재산은 확보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8월 20일 김수기 대사는 장효엄 차장이 박노영 대사에게 말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문서로 요약하였다.

각 지역의 자유 민주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첫째, "한·중국 수교 회담에서 중공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시에는 장래 우리의 한국 주재 대표 기구에 중화민국 명칭이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사관의 재산은 영구히 우리 소유이며 중공이 탈취하도록 둘 수 없다."

이렇게 대만 측이 한국과 중국 간의 수교가 불가피한 것임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수교 후 대만의 관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때까지 대만 측은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더라도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일부 인사와 언론에 대하여는 다소 융통성 있는 듯한 입장을 내비추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하여는 중국과의 수교 자체를 저지 내지 지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이 부장은 대만 측이 좀 더 일찍 한중수교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사후 대책과 한·대만 관계 조성에 관한 협의를 요구했었다면 양측 간의 보다 더 진지한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또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수교 교섭은 더 많은 시간을 요했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8월 21일 한국 정부는 8월 24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함을 대만 측에 2차 공식 통보하였다. 이 부장은 한중수교 관련 사항을 정식으로 사전 통보하고자 함을 전제하고 한국 내에 있는 중화민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토지와 건물은 중국과의 수교 후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김수기 대사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명백하게 비우호적인 처사이며,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의를 무시하고 중공의 압력에 따른 결

과로서 배은망덕"이라고 하면서 중화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력한 항의를 제기한다고 말하였다. 김 대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사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하고, 9월 초에 특별 사절단을 타이베이에 보내어 불가피성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가소로운 것"이라고 격렬한 발언을 하였다.⁴⁷⁾

대만 전복(錢復) 외교부장은 8월 22일 오후 3시 박노영 한국 대사를 불러 중화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곧 중국 대륙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가장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고 한국이 중국대륙과 수교하는 날부터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다. 전 부장은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시종일관 중화민국 정부를 "기만"하여 왔으면서 한국 대통령은 이등휘 총통을 비롯한 중화민국 측 고위 인사들에게 새 친구를 사귀어도 옛 친구는 버리지 않겠다고 수차 말해 왔으나 옛 친구를 버렸다고 비난하였다. 동시에 전 부장은 주한 대사관 재산 문제에 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 재산을 중공에게 양도하는 것은 최고의 비우호적 표현이며 재산을 찾기에는 시간이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사실은 서울 소재 대사관 부지에 관하여서는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목적으로 두고 있던 1991년 8월부터 언급해야 한다. 당시 중화민국 외교부의 장효엄 정무차장은 인사차 예방한 한철수 한국 대사에게 명동 대사관 부지를 다른 적당한 토지와 교환하며 대사관을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었다. 11월에는 장효엄 차장이 새로 부임한 박노영 한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정부의 협조를 다시

47)또한 김수기 대사는 한국 측이 매번 진전 상황을 알려 준다 해 놓고 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 기정 사실을 통보해 준 것은 "친구로서의 약속과 신의도 저버린 것"이며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한국 사람들은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런 짓을 하고야 말았다"고 개인감정을 토로하였다.

요청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는 중화민국 대사관의 왕개 공사가
외무부를 방문하며 토지 교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만 측이 멀지 않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명동 대사관 부지를 미리 매각 처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
주목을 받게 되었다.

11월 28일 중화민국 외교부는 서울 명동 소재 대사관 부지 매각설을
부인하고 토지 교환 방식으로 대사관 이전 문제를 한국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는 한국과 중화민국 간의 외교 관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은 아니고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였다. 외무부
는 대만 측의 대사관 이전을 위한 토지 교환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1991년 12월 말에 정부 관계 부처 간 회의를 열어 국제법과 국내 관계
법령상 중화민국 측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할 근거나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으며, 한국 주재 외국 공관의 요청에 의해 토지 교환을 주선할 선례가
없으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토지교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
다.

당시 이 부장은 이러한 방침 결정에는 한국 정부가 토지 교환에 개입
하면 향후 중국과의 수교 시에 중국 측이 한국 당국의 협조를 이유로 토
지 교환의 무효 및 회복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한국 내 화교
사회가 반대하고 있으며 대만 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는 점 또한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서울 대사관 재산 처리 문제에 관해 중국 측에서도 관심을 표명
하였다. 1992년 2월에 주 서울 중국 무역 대표부의 부대표가 외무부 아
주국 심의관을 찾아와 명동의 대사관 재산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 재산이므로 대만 측의 재산 매각을 방지하는 데 협조해 주
도록 요청한 바 있었다. 또한 3월 초 중국 외교부의 아주국장이 한국 무

역 대표부의 공사를 만난 자리에서 주한 타이완 대사관 부지 문제를 거론하며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으로 보아 대만 측이 한중수교 이전에 대사관 부지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뒤에도 대만 측이 한중수교 이전에 명동의 대사관 부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토지와 교환할 것이라는 풍문은 떠돌았으며, 대만 측이 장제스 총통 추모회와 같은 단체에 대사관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단체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건설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설도 있었으나, 대만 측은 한국 내 화교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 때문에 끝내 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옥 부장의 회고록에서 중국과 수교했던 다른 나라들의 예를 많이 제시하였다. 1979년 12월 미국과 중국 간의 수교 직전에 대만 측은 워싱턴에 있던 대사관 및 대사관저를 대만 계통의 민간단체에 10불에 매각하고 명의 이전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49년에 취했던 중국 내 미국 재산 동결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타이 등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수교 시 중국에 그 나라에 있던 대만 대사관 재산을 승계시켰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1990년 중국과 수교하였으나 이슬람 율법을 근거로 대만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인정하여 타이베이 경제 문화 대표부가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재산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대만 측이 취득한 것이었다.

결국 이상옥 부장은 서울 명동에 있는 대사관 토지와 건물은 대만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교 후 중국 측에 인도한다는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 소재 영사관은 1976년 구입된 것으로 77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재산임을 별도 합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치엔 부장은 한국 측이 합의 사항을 진실한 태도로 이행하려는 데 사의를 표

하면서 과거 수교 교섭이 노출되어 중국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며 수교 후 재산 문제를 순조롭게 처리해 나가리를 희망한다고 표시하였다.

1992년 8월 21일 한중수교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은 김수기 중화민국 대사는 8월 22일 오후 3시 명동의 대사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한중수교는 "노태우 정부의 잘못된 결정"⁴⁸⁾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도의를 외면하고 두 나라의 이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동양인들이 존중하는 조사의 재산마저 빼앗은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8월 24일 오후 4시 명동 대사관에서는 중화민국 국기인 청천백일기 하강식이 거행되었다.⁴⁹⁾

8월 24일 오전 10시 서울에서는 외무부의 김석우 아주국장이 대만 대사관의 왕개 공사를 만나 한중수교 공동 성명문과 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한 발표문을 수교하고, 한중 수교 및 한 타이완 단교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서울 명동 대사관 및 부산 영사관의 중화민국 국기와 현판을 수교 발표 후 72시간 내에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국 간 단교 후 민간 대표부 설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국 측 대표단을 9월 상순 타이베이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왕개 공사는 본국 훈령임을 전제하고 한중 수교 공동성명 제3항(하나의 중국 원칙)⁵⁰⁾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중화민국 정부는 한중 수교와 동시

48)특별 담화 발표에서 노 대통령은 대만과의 관계에 언급하여 "중국과 수교함에 있어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비공식 관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한중 관계를 더 이상 비정상적 상태에 둘 수 없는 급변하는 주변 정세하에서 당사자들을 포함한 국제 사회 전체에서 예외 없이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우리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대만과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여 한국과 대만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49)다음 날 조선일조는 '울어 버린 하기식-화교들 울분 터뜨려'라는 제하에 이를 보도하였다.

50)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여, 오직 하

에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통고하였다.

한편 타이베이에서도 8월 24일 한국 대사관이 국기 게양대에서 태극기를 내리고 대사관 현관을 떼어 공관을 폐쇄하였으며, 박노영 대사는 8월 25일 타이베이를 떠나 귀국하였다. 그 후 서울 명동의 대사관 부지와 건물은 부산의 영사관저와 함께 중국 측에 인도되었고 타이베이의 한국 대사관 건물은 대만 측으로부터 대여 받았던 부지와 함께 대만 정부에 인도되었다.

한중수교 여파가 지난 후에 10월 19일에 한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비 교섭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한국 측은 양측 간에 비공식 대표 기구를 상호 설치하며, 그 명칭은 주 대한민국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또는 주 대한민국 타이베이 대표부와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경제 문화 대표부 또는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로 할 것을 제시하고, 대표 기구의 대표 및 직원은 각자 정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민간 기구의 임직원 신분을 갖도록 하고, 상호 주의에 따라 외교 공관 및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되 국기와 국호는 사용하지 않으며, 대표 기구 및 구성원은 외교관 명부에 등재하지 않는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기전에 제시했던 입장을 견지하며 대표기구 명칭에 반드시 "중화민국" 국호 포함, 국기 게양, 대표기구 직원의 외교관 신분 인정과 외교관 대우 부여(외교관 명부 등재, 외교관 차량 번호판 사용), 정부기관 간 직접 접촉 등을 주장하였다.⁵¹⁾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 국내 "중국" 명의 제산 문제에 관하여 외교 및 영사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재산(서울대사관, 부산영사관저)은 중국 측

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51)이상옥, 2002, 『전환기의 한국외교 : 이상옥 전 외무장관 외교회고록, 서울 : 삶과꿈. pp.291-293

에게 이전되었다. 그 이외의 재산으로서 1949년 10월 1일(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만 측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한국은 특별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는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바, 대만 측은 부산 영서관저와 1949년 10월 1일 이후 구입한 비 외교 재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예비교섭단의 첫 방문에서 어떠한 합의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고 다음 실무 대표단 파견 일대만 인사들은 한국과의 교섭에 있어 핵심 문제가 국호이며, 중화민국이라는 국호 또는 약칭을 어떠한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내 강조하면서 협의에 도달하지 못 하였다.⁵²⁾

결국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한 후에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 설정을 위한 접촉이 재개되었다. 한국의 이현홍 외무부 본부 대사와 대만의 김수기 전 주한 대사를 단장으로 실무 대표단간 교섭이 두 차례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회담은 1993년 6월 15일, 16일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하였고 두 번째 회담은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사카에서 진행하였다. 관련된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공식 관계 설정

- 양측은 서울과 타이베이에 민간 차원의 대표 기구를 상호 설치한다.
- 대표 기구 명칭은 한국 측이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Korean Mission In Taipei)로 하고, 타이완측은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Taipei Mission in Korea)로 한다. (싱가포르와 타이완간에 합의 유형)

대표부의 기능

- 경제 협력, 통상 증진, 문화 교류 등 제반 분야의 협력 추진

기존 협정 대체

- 쌍방 간의 기존 협정은 호혜 원칙에 의거, 상호 협의를 통해 민간 기구

52)同51

사이의 협장으로 대체한다.

-대체되기 전까지는 기존협정이 점정 적으로 효력으로 유지한다.

한국 정부는 한중수교 시에 합의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여 양측교섭과 합의내용을 중국 측에게도 통보하였고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를 설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리하여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로 한국과 대만 간의 외교 단절이 비공식 관계로 거의 1년 만에 전화되며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와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각각 설치되었다.

IV. 결론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건국했을 때부터 다른 국가와 수교 시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본적 외교관계 원칙으로 인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일국양제⁵³⁾,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로 새로운 통일정책을 세웠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대만은 자신의 국제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무실외교(탄성외교)"를 적극적 추진하였다. 대만의 외교 공세로 얻은 성과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특히 대만에게 한국은 오래된 우방국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우방국이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중수교 회담에서 중국 측은 대만과 한국의 관계에 매우 집중하였고, 이는 3차례 회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⁵⁴⁾

53)일국양제의 의미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다. (One country, two systems)

54)1차 예비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이 대만문제에 관한 입장을 강요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영토 불가분의 일부이라고 한국 측에 승인해 달라고 하였다. 2차 회담에서 중국은 또 다시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요구하였다. 대만문제의 해결은 역시 한중수교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이때까지 한국 측은 대만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고려하며 협의를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3차 회담에서 한국 측은 중국에게 대만문제를 양보하며 협의를 달성하였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에 따라 한국과 중화민국(대만) 정부가 유지하고 있던 외교관계를 단절하여 여러 법적 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국 정부의 중화민국 정부 대사관 이양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대표권에 있어서 중국-대만 간의 국제법적 관계가 복잡하므로 한중수교는 결국 국가승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승인 또는 철회 문제로 규정되어야 한다. 1971년 10월 25일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축출되면서 국제법에 따라 중화민국 이름의 해외재산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은 아주 강력한 법이 아니라 외교상대국 간의 협상 및 타협으로 실제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국제법의 승인원칙을 그렇게 규정했지만 상대국가에 따라 정치적인 실행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또는 "하나의 중국"은 역사상의 특수성 때문에 국제선례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처리되었는데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재산권 취득 시간 또는 종류(외교재산 여부), 양국관계, 중공과 수교시기라 할 수 있다. 일본형은 일본은 1972년 중화민국과 단교하면서 중국공산당을 유일한 중국정부 대표로 인정하며 기존 대사관저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귀속시켰다. 이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일본처럼 이 방식을 따랐다. 미국형은 1979년 미국과 중공의 수교가 이뤄졌을 때 중화민국 정부는 대사관저를 주미대만친선협회에 매각하였고 미국 의회도 「대만관계법」을 제정하며 대만정부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유형은 1991년 사우디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중화민국 대사관을 대만무역대표부로 개칭함으로써 대만 정부재산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한중수교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북방정책으로 인해 중공과의 수교가 급박해서 대만과의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

공의 "하나의 중국"원칙에 양보하였다. 한편 한중수교를 비밀리에 진행 하였으니 중화민국 정부가 대사관저의 사전 처리가 캐나다 케이스처럼 하는 것이 어려웠다. 다른 한편은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수교 시기가 1992년이었는데 중공은 벌써 정치·경제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대형국가가 되면서 한국은 중진국으로서 외교적 협상 공간이 넓지 않았다. 결국 중화민국 정부의 대사관은 중공에 이양시켰다. 이로 인해 대만과 한국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롭게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게 되었지만 대만은 한국을 최악의 단교국가로 비난하였고 이와 같은 반한정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화민국과의 단교 시 양방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고 미국처럼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으로 특별한 입법수단으로 정부재산을 처리하였다면 양국의 공식 외교관계가 유지될 수 없더라도 더 원만하게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비공식적 협의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대만 정부재산의 이양을 일본형에 따라 처리한 원인을 탐구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으나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논의의 한계를 안고 있다. 이후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성윤. 1992. 「한중수교의 전망과 남북한관계」. 『통일문제연구』. 4권 1호. pp.231-258.
- 임예준. 2015. 「국제법상 정부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한 소고」. 『고려법학』 (고려대학교연구원) 76권 0호. pp.395-436.
- 이규태. 1994. 「한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 과거, 현재, 미래」. 『동아연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7권 2호. pp.66.
- 이근관. 2006. 「대만정부와의 외교관계 단절(1992) 이후 한국-대만 간 조약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법학』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47권 2호. pp.253-286.
- 손준식. 2013. 「‘兄弟之邦’에서 ‘兪地之邦’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8권. pp.27-53.
- 강준영. 2013. 「한-대만 단교20년의 회고와 전망-새로운 한국-대만관계를 위하여-」. 『한중사회과학연구』 26권. pp.1-20.
- 홍성의. 2012. 「한중수교 20년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15권 1호. pp.271-300.
- 오경훈. 1992. 「한중수교와 한반도 주변정세」. 『정세연구』 (민족민주운동연구소). pp.41-51.
- 오수열. 1991.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중수교전망」. 『통일문제연구』. 3권 2호. pp.9-36.
- 김찬규. 1983. 「정부승인의 취소」. 『고시계』. 29권 1호. pp.48-156.
- 정병원. 1990. 「(국제법)국가승계」. 『고시계』. 35권 8호. pp.324-326.
- 慎鏞鎬. 2008. 「국가재산의 국가승계에 관한 관행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53권 3호. pp.95-122.
- 李成日. 2012. 「回顧1992年中韓建交的历史意义」. 『국제지역학논총』, 5권 2호. pp.1-26.
- 林碧炤, 鄭端躍. 1992. 「臺灣의 實利外交政策」. 『中蘇研究』. 54호.
- 王恩美. 2011. 「1971年 中國代表權問題與韓國政府 中國政策的轉變」. 『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 第 36 期
- 王文隆. 2009. 「中華民國與加拿大斷交前後政府的處置1968-1970」. 『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第32期. pp.263-304.
- 林彥宏. 2014. 「從國際法看加拿大《台灣事務法》的研擬」. 『臺灣國際法季刊』. 11卷 4期. pp.67-97.
- 吳志中. 2006. 「一個中國政策與台灣加入國際組織的資格」. 『臺灣國際法季刊』. 3卷 3期 . pp.99-132.
- 謝笠天. 2009. 「台灣於美國法院之法律地位」. 『臺灣國際法季刊』. 6卷 2期. pp.53-84.
- 李明峻. 2008. 「從國際法看臺日關係」. 『臺灣國際法季刊』. 5卷 3期. pp.159-187.
- 李明峻. 2006. 「政府承認與國內法院的訴訟權」. 『臺灣國際法季刊』. 3卷 3期. pp.29-58.
- 李明峻. 2006. 「台灣在日本法院之地位：以光華寮案為例」. 『臺灣國際法季刊』. 6卷 2期. pp.85-116.
- 李明峻. 2013. 「分裂國家與國際法」. 『臺灣國際法季刊』. 10卷 4期. pp.41-67.
- 江啟臣. 2006. 「一個中國與中華民國的法律地位」. 『臺灣國際法季刊』. 3卷 3期. pp.134-160.
- 이상욱. 2002. 『전환기의 한국외교 : 이상욱 전 외무장관 외교회고록』.

서울 : 삶과꿈.

- 첸치천. 2004. 『열 가지 외교 이야기』. 서울 : 랜덤하우스중앙.
- 錢復. 2005. 『錢復回憶錄卷一·外交風雲動』. 天下文化
- 錢復. 2005. 『錢復回憶錄卷卷二·華府路崎嶇』. 天下文化
- 朱立熙, 文興鎬. 2015. 『台韓外交關係史』. 台北 : 知韓文化協會
- Paul K.W and Kelton C.H. 2003. *Cleveland Park*. Arcadia Publishing.
- Al Kilborne. 2008. *Woodley and It's Residents*. Arcadia Publishing.
- Paul ST. 1987. *Restatement of the Law: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Law Institute.
- 정기수, 강승규. 1992. 「주한 대만대사관 어떻게 되나」. 『경향신문』, 8월 22일, 18
- 황유성. 1992. 「주한 대만대사관 어떻게 되나」. 『동아일보』, 8월 22일, 4
- 정인화. 1992. 「모든 대만자산 중국에 귀속」. 『경향신문』, 8월 25일, 4
- 조경엽. 1992. 「명동에 중국대사관 10월1일 들어선다」. 『매일경제』, 9월 1일, 23
- 송인성. 1992. 「북방외교 추진 앞서 대만관계 재검토를」. 『동아일보』, 12월 9일, 15
- 錢復. 1991. 「恢復我國在聯合國會籍案」. 『立法院外交委員會』. 10월 17일, 88
- Hungdah Chiu. 1992.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Republic of China ". *Contemporary Asian Studies*. 5(112)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Transition of Government Properties from ROC to PRC in 1992

SUN YEN CHU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Korean Studies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year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but it also marks the 25th year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China (ROC, Taiwan) have broken of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recogniz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representing China and severed ties with Republic of China (ROC, Taiwan), a longtime ally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breakup of diplomatic rel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 longer officially acknowledges the Republic of China. Instead, it is referred to as Taiwan and maintains an unoffici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The political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not yet subsided due to the process surrounding the breakup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ransferred the property rights of the Chinese Embassy, located in Myeong-dong (Seoul), from the Republic of China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behavior enraged many Taiwanese and deepened tensions between Korea and Taiwan. Even today, this incident remains a sad memory to the people of Taiwan.

In order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the primary focus is to address this past historical event. In particular, the issue regarding the transfer of government property during the breakup of diplomatic relations should be properly and carefully reviewed.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ssue of transferring government property from ROC to PRC. It begins with an examination of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n, it analyzes and reviews past cases of the transfer of government properties when other countries severed ties with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Finally, it reexamines the transition process and result of the government properti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ROC, Taiwan).

Keywords: Recognition of government, International Law, One China, China Representation,

Student Number: 2015-25172